

재정위원회 규정

제정 2020. 02. 0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학운영의 책무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, 재정·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재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재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운영계획 중 재무경영과 관련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대학발전을 위한 기금조성 및 후원에 관한 사항
4. 입학금, 수업료 등 학생의 금전적 부담에 관한 사항
5. 장기차입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총장이 대학의 재무경영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부총장 2명과 대학본부의 당연직 6명을 포함하여 23명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
1. 부총장 2명
2. 교육연구처장, 기획평가처장, 학생행복처장, 대외협력처장, 행정지원처장, 산학협력단장
3. 과반수 교수단체 및 교섭대표 노동조합(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)이 추천하는 본교 교직원 5명
4. 총동문회가 추천하는 외부인사 2명
5. 총장이 임명하는 본교 교직원 5명
6. 총장이 위촉하는 외부인사 3명

②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부총장 중에서, 부위원장은 구성원단체가 추천하는 본교 교직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.

제4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의 사임이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총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긴급한 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.

④ 제3항의 경우 차기 위원회와 총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심의 경과와 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8조(심의결과의 처리)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, 총장은 그 중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.

제9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둔다.

② 기획예산팀장이 간사가 되어 위원회 사무를 주관한다.

제10조(회의록의 작성)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 요지,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여야 한다.

제11조(경비지원)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총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운영세칙) 위원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66, 2020.02.01)

이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